



#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제품, 철저히 관리·감독한다!

등급표시 위반 10개 모델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조치

## 요약

- 지식경제부(최경환 장관)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·판매금지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
- (대상 및 내용) '09.1월 ~ '10.1월간, 19개 품목·179개모델 제품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 검사하고 위반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음
  - (생산판매금지) 최저소비효율에 미달된 5개 회사의 전기냉장고, 백열전구, 어댑터·충전기 등 6개 모델
  - (등급조정)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한 2개회사의 전기진공청소기, 선풍기 등 2개 모델
  - (표시사항정정)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한 2개회사의 선풍기 2개 모델
- (조치 의무 등)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('10.3.10)하고, 해당 제조·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이내 보고해야 함
  -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·과태료등의 벌칙에 처할 수 있음



## 제도개요

- “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”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(10년 기준 22개 제품)을 정하여,
  - 제조·수입업체가 효율등급(에너지효율 성능)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,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·판매를 금지

### ◎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

-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
  - 생산·판매 금지 명령 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6조 제2항)
  -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등급표시 위반 및 허용오차 초과 등
  - 등급조정, 표시사항 정정 명령 등 (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6조 제1항)
  -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(허위표시, 미표시) 부과

-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,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을 수거하고 신고·표시내용과 측정치에 대한 비교·검사를 매년 실시중임
  - 대상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있음

## 향후계획

- 생산·수입업체의 지속적인 에너지효율·품질개선 유인과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,
  - '09년도 등급표시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이행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,
    - 10년도에도 과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,
  -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, 전기냉장고,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강화 계획임을 밝혔음

